

롯데카드 신용카드 핵심설명서

핵심 설명서



이 설명서는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신용카드 계약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**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핵심내용**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.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【계약 체결시 신용카드 회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】

- ◆ 회원은 발급된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.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잃어버린 경우,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 (☞ 제5조, 제40조)
- ◆ 회원은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됩니다. (☞ 제5조)
- ◆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카드사는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전 이후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. 다만,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됩니다. (☞ 제40조)
- ◆ 회원은 주소, 전화번호, 직장명, 자동이체계좌, 이메일,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이 바뀌었을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 (☞ 제44조)

【신용카드 약관의 주요 내용】

- ◆ (부가서비스) 카드사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을 새로 출시한 후 3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. 또한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앨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을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. (☞ 제15조)
- ◆ (연회비 청구)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. (☞ 제6조)
- ◆ (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) 연회비 부과기간 (1년)이 끝나기 이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계산하여 10영업일(불가피한 경우 3개월) 이내에 돌려 드립니다. 다만, 카드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제외됩니다. (☞ 제6조의2)
- ◆ (이용한도) 카드 이용한도는 카드발급을 신청 할 때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회원이 신청한 금액 범위 이내에서 책정되며, 회원의 신용도가 변동 되었을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이용 한도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. (☞ 제10조)
- ◆ (부정사용책임) 카드정보 해킹, 카드사의 정보 유출 및 카드 위·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. 다만, 회원이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등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. (☞ 제41조)
- ◆ (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)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을 이용하여 **이월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.** (☞ 제32조, 제35조)

※ 신용카드 발급 계약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**고객센터(1588-8100)** 또는 **인터넷홈페이지(www.lottecard.co.kr)**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〈금융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중요사항〉

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 가능성

대출원금,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며 금융거래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연체금액을 상환 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 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“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, 연체금액 10만원 이상”의 [단기연체]가 발생하는 경우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 회사 간에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점수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예상하지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
신용카드 주요 거래조건 안내

1.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안내

- 연회비 청구: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.
 - 연회비 반환사유: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성립됩니다.
 -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: 카드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. 단, 실물카드 발행, 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(신규발급의 경우)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연회비 반환금액에서 제외 가능합니다.
 - 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: 카드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합니다. 단,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.
- ※ 연회비 전반에 대한 사항은 「신용카드 개인정보처리방침」의 연회비 관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롯데카드 개인회원 약관 주요내용 안내

제 5조 (카드의 관리)

-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, 본인 이외의 배우자,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-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,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·관리하여야 합니다.
-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·대체·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,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.
-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 다만,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제 7조의 4 (휴면카드 연회비 반환 및 해지)

- 카드는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(발급 후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)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(이하 '휴면카드'라 함)로 된 경우,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,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카드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5항에 따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 -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
 -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(하이패스카드),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
-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,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.
- 카드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.
- 전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차년도 연회비 청구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연회비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, 반환금액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.
- 제3항에 따라 이용정지된 신용카드는 유효기간 종료 시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없으며, 이용정지 상태에서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 인해 회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고,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카드사가 부담합니다.

제 42조 (비밀번호 관련 책임)

카드는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및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, 통신판매,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및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, 통신판매,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.